

# 한국지도학회 논문상 심사 및 시상 규정

2017年 6月 3日 制定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지도학 분야의 후속세대 연구자의 우수 연구를 발굴하고, 이를 장려하기 위한 한국지도학회 논문상(이하 ‘논문상’)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대상 논문)** 논문상은 한국지도학회지에 게재된 대학원생이 주 저자(제1저자, 교신저자)인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.

**제3조(대상 기간)** 논문상의 심사대상 논문은 전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한국지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한다.

**제4조(심사대상자)** 논문상의 대상자는 한국지도학회 회원이어야 한다. 단, 심사기간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논문상을 이미 수상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

**제5조(심사위원회)** ① 논문상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한국지도학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임명하고, 학술부장, 편집부차장, 총무부차장, 학술부차장 각 1인이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.

1. 접수된 논문의 심사 원칙 및 규정
2. 관련 규정의 개폐
3. 논문 심사
4. 기타 필요한 사항

④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**제6조(신청절차)** 논문상의 심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, 신청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모 마감일까지 한국지도학회 학술부에 신청해야 한다.

1. 지원서(소정양식)
2. 추천서(소정양식)

**제7조(회의)**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.

**제8조(심사절차)** ① 위원장이 대상 논문을 지정하여 각 위원에게 공지한다.

- ② 심사위원은 대상 논문에 대해 절대 평가 방식으로 심사한다.
- ③ 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취합한 후, 논문별로 합산하여 순위를 부여한다.
- ④ 심사 결과 최고 순위자를 논문상 수상자로 확정한다.

**제9조(심사위원의 임기)** 심사위원의 임기는 한국지도학회 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.

**제10조(심사 시기)** 심사는 11월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심사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
**제11조(시상)** 논문상은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.

**제12조(기타사항)**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